

#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 상식

## 재산상속

### ●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 ●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승계를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딸은 모두 똑같은 뜻을 받는다. 즉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뜻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뜻보다 50%를 더 받는다.

### ●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전에는 아들이 자녀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나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 ● 재산 축적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몫에 그 공로의 뜻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 그 뜻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준다.

## 유언 및 유류분

### ●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 ●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 한다.

### ● 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뜻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적 상속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 ●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